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1가단1056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여봉열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연두,오동현,정지원

변 론 종 결 2021. 12. 21.

판 결 선 고 2022. 5. 3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60,9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부터 2022.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2. 가.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2020.

12. 28. 체결된 각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다.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2020. 12.28. 접수 D로
마친,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2020. 12. 28. 접수E로 마친, 각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주문
제1항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의 나, 다항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사이에서 아래의 사실은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정보처리 시스템 관련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아이티 관련 개발 및
컨설팅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0. 6. 29.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을체결하였다.

계약명 : F

계약기간 : 2020. 06. 01. - 2021. 01. 31.

대금지급조건 :

회차	지불 예정일	지급금액
1	2020년 6월	13,860,000(12,600,000원+1,260,000원)
2	2020년 7월	46,777,500(42,525,000원+부가세 4,252,500원)
3	2020년 8월	46,777,500(42,525,000원+부가세 4,252,500원)
4	2020년 9월	46,777,500(42,525,000원+부가세 4,252,500원)
5	2020년 10월	46,777,500(42,525,000원+부가세 4,252,500원)
6	2020년 11월	46,777,500(42,525,000원+부가세 4,252,500원)
7	2020년 12월	46,777,500(42,525,000원+부가세 4,252,500원)
8	2021년 01월	46,777,500(42,525,000원+부가세 4,252,500원)
		341,302,500원

다. 원고는 2020. 7. 1. 피고 B와 다음과 같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 G

계약기간 : 2020. 07. 01. - 2020. 10. 31.

대금지급조건 :

회차	지급예정일	지급금액
1	2020년 8월	7,150,000원(6,500,000원+부가세 650,000원)
2	2020년 9월	7,150,000원(6,500,000원+부가세 650,000원)
3	2020년 10월	7,150,000원(6,500,000원+부가세 650,000원)
4	2020년 11월	7,150,000원(6,500,000원+부가세 650,000원)
		28,600,000원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으나 피고 B로부터 용역대금

160,985,000원(제1계약 146,685,000원 + 제2계약 14,300,000원, 부가가치세포함)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60,9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2. 2.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피고 B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도 피고 B의 위 미지급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제1, 2계약체결 이전인 2020. 1. 15. 설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계약 용역대금 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 2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B이 피고 C의 실질적인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형해화되었다거나, 피고 C가 피고 B에 대하여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피고 B은 피고 C에 대한 용역대금 변제에 갈음하여 2020. 12. 28.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와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특허청 접수번호 D, E로 특허권이전등록을 마쳤다.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무렵인 2020. 12. 31. 기준 피고 B의 대차대조표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B이 그 적극 재산을 피고 C에 대한 변제조로 넘겨준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양도경위에 비추어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될 뿐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2)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 C의 설립 경위, 피고들 간의 업무상 협력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 B의 재산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양도로 피고 B의 일반 책임재산이 감소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한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특허권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혜승

별지

목 록

1. 특허번호 : H

출원년월일 : I

출원번호 : J

공고년월일 : 2018년 10월 19일

발명의명칭 : K

등록년월일 : L

특허권자(최종권리자) : C 주식회사

세종특별자치시 M건물, N호

2. 특허번호 : O

출원년월일 : P

출원번호 : Q

공고년월일 : 2020년 08월 20일

발명의명칭 : R

등록년월일 : S

특허권자(최종권리자) : C 주식회사

세종특별자치시 M건물, N호(끝)